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60
----------	-------

발의연월일 : 2026. 7. 21.

발 의 자 : 안도결 · 허성무 · 유동수
정진욱 · 이건태 · 김태선
복기왕 · 임호선 · 정일영
정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동전쟁 등으로 인하여 국내 비닐 등 합성수지 제조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Naphtha)의 안정적인 수급의 어려움과 가격 변동 우려 등으로 국가적인 원자재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

현행 종량제봉투는 주로 원유 기반의 신재(新材)를 원료로 제작되고 있어 이와 같은 외부 공급망 충격에 매우 취약하므로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는 수입산 원유(신재) 의존도를 낮추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재생원료의 사용을 선제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따라 국민 생활에 필수 공공물자인 쓰레기 종량제봉투에서부터 폐비닐 재활용을 통한 재생원료 수요를 선도적으로 창출하여 국가적인 자원순환 체계로의 성공적인 전환이 필요함.

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

기물 처리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합성수지 재질의 종량제봉투를 제작·구매하는 경우, 해당 종량제봉투의 재질과 재생원료의 함유 비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기존 신재 중심의 생산 구조를 탈피하고 폐비닐 재생원료의 사용 확대를 통해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합성수지 재질의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고자 할 경우 종량제봉투의 재질, 재생원료의 함유 비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④ (생략)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 ----- ----- ----- ----- ----- ----- ----- 다만, 합성수지 재질의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고자 할 경우 종량제봉투의 재질, 재생원료의 함유 비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 ⑩ (생략)	⑥ ~ ⑩ (현행과 같음)